#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60

발의연월일: 2025. 4. 9.

발 의 자:김문수・김 윤・박지원

김동아 · 이재관 · 조계원

박해철 • 이용선 • 허성무

김남근 · 김준혁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립유치원을 설립·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 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유치원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유치원이 폐쇄될 때 유아들을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(轉園)하여야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등 유아를 지원하는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사립유치원의 설립·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할 때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, 교육 감은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 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4항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인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1. 유치원의 폐쇄 계획 및 절차
- 2. 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
-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통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가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치원의 폐쇄 인가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치원의 폐쇄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유치원의 설립 등) ① ~	제8조(유치원의 설립 등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사립유치원을 설립・경영하	4
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	
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	
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	
다. <u>&lt;단서 신설&gt;</u>	<u>다만, 유치원을 폐쇄하려는</u>
	경우에는 인가 신청 전에 다음
	각 호의 사항을 학부모에게 통
	<u>지하여야 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1. 유치원의 폐쇄 계획 및 절차
<u> &lt;신 설&gt;</u>	2. 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 조치
	<u>계획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유
	치원 폐쇄 인가 신청이 있는
	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
	통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가하
	<u>여야 한다.</u>